

제출한 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최종평가<sup>⑪</sup>에서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를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1995년 5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이 모든 신구(新舊)를 막론하고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한국 정부가 그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또한 규약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정부가 모든 국내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권규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법 집행 기관들이 사회권규약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절차에 규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지적했다.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차 사회권규약 정부 보고서 심의에서도 거의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2001년 5월 2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사회권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가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 경우 신법(新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 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sup>⑫</sup>고 밝혔다. 이어 사회권위원회는 제안과 권고에서 “한국 정부가 규약이 국내법 체계 안에서 근거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규약의 지위가 구별이든, 신법이든 혹은 특별법이든 관계없이 모든 국내법에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의 2차례에 걸친 권고는 국제인권법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⑪ E/C.12/1995/3

⑫ E/C.12/1/Add.59

#### 4 한국 정부의 사회권규약 비준 그 이후

한국 정부는 1990년 3월 16일 사회권규약을 국회에서 비준한 후 유엔에 기탁하여, 1990년 7월 10일부터 적용받아 왔다. 한국 정부가 규약 당사국으로서 규약에서 부과하는 이행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규약 비준 후 1년 이내에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규정하에 1994년 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했고, 이어 민간단체들도 반박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1995년 1차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한국 정부에게 빠른 경제성장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사회·문화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제기준에 맞추어 노조 결성과 파업권 보장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산업안전에 관한 규정과 최저임금을 10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 ■주거권 보장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 증가 등을 권고했다.

표 1 한국 정부 1차 사회권규약 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우려와 권고

정부보고서	1차 1994
권고안 제출일	1995.5
문제 영역	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한 우려 노조 결성 및 교사의 단결권 제한 파업의 과도한 제한 경찰의 노조활동 공격 우려 가정폭력, 국적법, 교육기회, 고용차별, 임금격차에서의 여성차별 높은 산업재해 발생 노동 관련 규제 및 최저임금제의 10인 미만의 사업장 배제 이주노동자의 처우와 작업조건에서의 차별 중·고등교육으로 무상교육 확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및 강제철거 실시에 대한 우려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족
권고 내용	<p>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에 있어서 신(新)·구(舊)를 막론하고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도록 국내법 재검토</p> <p>규약에 대한 교육</p> <p>규약의 사법절차 적용</p> <p>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 보장</p> <p>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자원 배분</p> <p>산업안전에 대한 규제 및 최저임금제를 1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확대</p> <p>노동조건에서 이주노동자의 동등한 대우 및 차별금지</p> <p>주거권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강제철거 금지</p> <p>여성을 포함해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의 중등, 고등교육의 접근권 강화</p> <p>인권교육 실시</p> <p>극빈자, 무주택자,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p>

또한 2001년 5월 11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강력한 권고를 내렸다. 19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6년 만에 이뤄진 권고에서 위원들은 1995년 1차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제고하고 규약의 권리를 보장할 것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아동 성매매와 아동노동의 근절 대책 ■강제철거의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임시 주거시설 등의 보호 ■공교육 시스템 강화 등을 권고했다. 2차 보고서 심의는 IMF 체제 이후 사회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종합적인 평가로 정부가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상태의 악화, 소득불평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21개 항목의 주요 우려사항을 열거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한국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유엔의 최종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 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⑩</sup> 하지만 그 후 현재

까지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는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⑩ 인권운동사랑방, 2001, 인권하루 소식 2001년 10대 뉴스, 유엔 한국의 사회권 종합 진단,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7일자(1993호).

표 2 한국 정부 2차 사회권규약 보고서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우려와 권고

정부보고서	2차 1999
권고안 제출일	2001.5
문제 영역	<p>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한 우려(국내 법원에서 원용되지 못한 점, 판례가 전무하다는 점)</p> <p>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여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 호주제, 높은 가정폭력 비율, 낮은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율, 높은 남녀임금 격차,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존재)</p> <p>임금, 연금혜택, 실업, 의료혜택 등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증가</p> <p>높은 산업재해</p> <p>교사들의 파업권과 단결권 금지</p> <p>파업에 대한 불법화</p> <p>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아동노동, 아동학대 증가에 대한 우려</p> <p>도시로 인구 집중 및 농촌의 공동화</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제도에서 극빈층 배제</p> <p>장애인 의무고용 쿼터제 불이행</p> <p>철거민에 대한 보상 미시행 및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불안정한 주거환경</p> <p>높은 사설의료기관의 증가</p> <p>질 낮은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p> <p>여성의 고등교육 기회 부족</p> <p>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 난민지위 인정기준</p> <p>인권교육이 인권 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지 못한 점</p> <p>국가보안법이 예술인, 지식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점</p>
권고 내용	규약의 국내법적 지위보장에 있어서 신(新)·구(舊)를 막론하고 모든 국내법에 우선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과 파업권 보장  
 아동 성매매와 아동노동 금지 및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와 원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정부 내 주택문제를 지원하는 담당부서 지정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임시주거 시설 제공  
 노숙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에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도록 즉각적인 조치 실시  
 공교육 강화계획 수립  
 중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합리적인 기한 설정  
 고등교육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 보장  
 인권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캠페인 실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마련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1995, UN  
 HRI/GEN/1/Rev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1,  
*COMPILED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7,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 A Compilation of Essential Documents*

#### 참고문헌

- 사회권연대회의, 200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단체 약식보고서」,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1』  
 사회권연대회의, 2001,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단체 본 보고서」, 『사  
 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1』  
 인권운동사랑방, 2001, 인권하루소식 2001년 10대 뉴스 중 유엔 한국의 사회권 종합  
 진단, 인권하루소식 2001년 12월 7일자 1993호  
 정경수, 2000,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 『민주법학 제17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정인섭, 2000,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 회고」, 『국제인권법 3호』, 국제인권법학회  
 최승환, 1998, 「인권제도의 효율성: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의 실천  
 제도(배재식박사고회기념논문집)』, 박영사  
 E/C.12/1/Add.59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n non-compliance with reporting obligations by States  
 parties, Republic of Korea, 2001, UN  
 E/C.12/1995/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 5

## 2조 1항 당사국의 이행의무

허 혜 영 |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 ~1 시작하며

### ■ 국가의무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넘어

인권은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삶의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다. 역사적으로 인권은 국가의 억압에 저항하고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어 왔다. 한편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위한 진보운동의 수단으로서 인권개념은 개별 인권이 발생시키는 국가의 의무를 내포한다. 따라서 국가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인권을 실질적인 개념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인권이 부과하는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것의 이행을 요구할 때, 비로소 인권은 모든 형태의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인권운동의 출발점으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은 국가의무에 대한 구체적 인식 위에서 가능하다. 국가의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존 인권체계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두 인권 범주가 발생시키는 국가의무에 대한 이론적, 정치적 왜곡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다. 왜곡의 핵심은 자유권과 사회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각각 '소극적 의무' 대 '적극적 의무'로 일반화하여 구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게 불간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사회권은 상당한 재정 지원을 동반하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권의 보장은 정치적 문제이지, 국가의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되어 왔다.<sup>①</sup> 그리고 이러

① 보다 자세한 내용은, E. Vierda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9, 1978; M. Bossuy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Strengths and Weaknesses", in K. Mahoney and P. Mahoney(eds.), *Human*

한 왜곡 위에서 사회권 관련 국제규범 및 협약 조항의 법적 효력은 많은 경우에 부정되었다.

그러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위와 같은 이분법은, 1980년대 이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서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sup>②</sup> 실제로, 자유권이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요구하거나, 사회권이 소극적 의무이행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들은 기존 인권체계를 뒤틀친다는 이분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자유권 범주로 간주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발생시키는 국가의무는 무상법률원조를 제공할 적극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비슷하게, '고문 및 비인간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국가에게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구금시설을 제공하고, 법 집행 공무원이나 경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한편, 사회권도 국가가 단지 직접 침해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은 많은 경우에 강제노동금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금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는 핵실험 혹은 화학무기 실험금지, 강제철거금지와 같은 소극적 의무 이행으로도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 ■ 2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실현할 의무

앞서 언급했듯이, 인권의 실현은 국가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위에서 가능하다. 이 맥락에서, 개별 인권이 부과하는 다양한 의무에 대한 접근을 막는 단순한 이분법적 범주화—자유권과 사회권,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는 결국 인권보호 수준을 정체 혹은 후퇴시키는 요인이다. 1980년대부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학자들은 인권의 이분법에 근거한 기존 인권체계에 대안적 접근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1993.

② 보다 자세한 내용은, van Hoof, G.J.H., 1984, "The Legal Na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Rebuttal of Some Traditional Views", in Philip Alston and Katarina Tomasevski(eds.), *The Right to Food*.

그 과정 속에서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state-obligation based approach)'이 도출되었다.<sup>❸</sup> 이 접근은 각각의 개별 인권으로부터 존중할 의무(obligation to respect), 보호할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실현할 의무(obligation to fulfill)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우선, 존중할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 향유를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대안적 주거의 공급 없이 강제로 공유지의 무단 거주자를 내쫓는 것은 존중할 의무 위반에 의한 주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소유 시설이 공기, 토양, 물을 오염시켜 개인의 건강을 해친 경우, 특정 개인에게 차별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 경우 등은 건강권을 존중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혹은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사기업에 의한 노동착취 혹은 유해물 방출, 고리대금업자의 횡포,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법률가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를 비롯한 일군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채택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다음과 같은 보호할 의무 위반을 인권침해로 규정하였다.<sup>❹</sup>

14(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15(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실현할 의무는 권리와 자유의 효과적인 실현에 목표를 둔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말한다. 이 의무의 핵심은 개인이 실업, 장애, 노령의 경우와 같이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다른

대안적 방법을 가지지 못할 경우에,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이다. 건강보험제도를 수립하고, 공공 주거를 제공하는 것 등이 실현할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 기존 인권체계에서 실현할 의무는 상당한 재정 지출을 동반하며, 위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법적 의미기보다는 정치적 문제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래 사회권위원회)'와 국제법률가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실현할 의무를 구성하는 몇 가지 법적 요소들을 분석해 왔다. 이를테면, 실현할 의무 이행에서의 차별금지, 권리향유 수준을 후퇴시키는 조치금지, 개별 인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수준을 충족시킬 의무, 그리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무 등을 통해서 실현할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위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권 박탈 상황은 실현할 의무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실현할 의무를 강제한 예들은 최근에 몇몇 국가들의 판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sup>❺</sup>

존중·보호·실현의 의무에 기초한 인권의 이해는 개별 인권이 부과하는 국가의무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세 유형의 국가의무에 기초하여 개별 인권조항들을 해석하는 일은 기존 인권체계 속에서 단지 선언적 규범으로 취급되는 사회권

❸ 보다 자세한 내용은, 허혜영, 200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❹ UN Human Rights Study Series, *Right to Adequate Food as a Human Right* (1989) 24; Eide, A., "Article 25" in Eide, A., Alfredsson, G., Melander, G., Rehof, L. and Rosas, A.(eds),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 Commentary* (1992); Shue, H., *Basic Rights: Subsistence, Affluence, and US Foreign Policy* (1980); Hunt, Paul, *Reclaiming Social Rights -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1996).

❺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8, *Human Rights Quarterly*, 20(3), paras. 14(c), 15(d).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 2 조항 해설

### 2조 1항 국가의 이행의무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기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① “입법 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

2조 1항에 따라 국가는 “특히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든 적절한 수단’에는 입법 및 사법적 조치, 행정 조치, 재정 확보, 교육적 조치 등이 포함되며, 국가는 규약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이 취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 향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는 사회권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된다. 특히, 국가가 권리 실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는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참여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알고, 그것이 모든 국가정책에 고려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입법 조치

2조 1항에 드러나 있듯이,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입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 당사국의 의무의 성격에서 “많은

경우에 입법 조치는 높이 장려할 만하고, 몇몇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특히,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의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권을 비롯하여 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는 필수적으로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권위원회의 해석이다. 그리고, 국가가 ‘권리보장을 위해 입안된 현행법을 폐지하거나’, ‘규약의 의무와 모순되는 현행법을 개혁 혹은 폐지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규약의 의무와 모순되는 법을 입안하거나’,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고안된 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sup>⑥</sup>

그러나 규약 규정에 일치하는 법만 가지고 의무 이행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실무·감독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 조치들을 통해서 그 법이 실질적으로 권리 향유에 기여한 후에야 비로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를테면 ‘공정한 노동조건에 대한 법’이 있어도 기업이 그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강제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규약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사법적 구제조치

더불어, 국가가 취해야 할 ‘모든 적절한 수단’ 중에서 ‘사법적 구제조

⑥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법에 대한 ‘사회권규약’의 우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는 2001년 5월 11일 한국 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상 지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1차 보고서 심의 이후에, 규약의 권리를 국내법에서 완전히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헌법에 따르면 규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데, 이 경우 신법 또는 특별법이 규약의 일부 권리에 우선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위원회는 우려한다. 또한 규약상의 모든 권리가 국내 법원에서 직접 원용되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이 없는 점, 그리고 그러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사회권연대회의, 2001,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한국」,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1」.

치'를 빼놓을 수 없다. 사법적 구제조치는 권리 침해에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뿐 아니라 권리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의 규약 준수를 촉진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개인이 국내 사법기관에 호소하는 것이 가능할 때 개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권리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대해 사회권규약의 규정들이 모호하여 사회권의 침해 여부를 판가름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사법적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이 '어려운' 것은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문제이지, 불가능하다고 애초에 덮어둘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 게다가 개별 권리들에 관한 일반논평과 국가보고서 심사결과들에 의해서 각 조항들이 내포하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는 명확해지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에서 규약 내의 여러 권리에 대해 사법 구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의 차별금지', '3조의 남녀평등', '7(a)(i)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8조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10(3)의 착취로부터 아동보호', '13(2)(a)의 무상의무 초등교육', '13(3)의 부모의 학교 선택의 자유', '13(4)의 교육기관 수립의 자유', '15(3)의 학문연구와 창조활동의 자유' 등 사회권규약 내의 많은 조항들이 국내법 내에서 사법부 및 다른 기구들에 의해 즉각적인 적용이 가능하다.⑦」

사회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이미 다른 사회권 관련 지역조약들이 준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청원제도

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회권규약 역시 청원제도에 관한 선택의정서 채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⑦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3, The Nature of States parties obligation, para. 5.

## 2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의무"

2조 1항에 있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란 부분을 두고서, 사회권규약이 국가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진적으로' 달성할 문제를 놓고 어떻게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 혹은 권리 침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우김일 뿐이다. 우선, 사회권규약 내에는 완전한 실현이 국가의 '즉각적인' 의무 이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 조항들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2(2)조의 차별금지', '3조의 남녀평등', '7(a)(i)조의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8조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즉각적인 이행을 부과하는 권리 조항에 대해서 당사국은 '점진적인 달성'을 들먹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의 즉각적인 의무 이행의 대상에서 제외된 권리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따르면 그러한 권리들을 실현하는데 '점진적인 달성'이 허용된다고 해서 당사국의 법적인 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 같다.

첫째, '점진적인 달성의 의무'는 곧 '권리 보장 상태를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할 의무'를 의미하므로, 국가가 권리 보장 상태를 후퇴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사인에 의한 권리 후퇴 조치를 묵인하는 것은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다른 대안조치 없이 무단거주자를 내쫓거나, 특정 공공지출을 삭감한 경우 등을 모두 당사국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후퇴 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당사국이 국내의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역시 의무 위반에 속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개인의 권리 향유를 진전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

다 권리 보장 상태를 진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미룰 수 없는 분명한 국가의 의무이다.

둘째, 완전한 실현이 즉각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권리들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향유'를 '즉각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인 의무'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 혹은 집단이 규약에서 보장한 어떤 권리의 기본적인 향유를 박탈당했다면 당시국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회권위원회는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국가의 최소 핵심 의무라고 정의하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일반논평들 속에 개별 조항들이 내포하고 있는 '최소 핵심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 14 성취할 수 있는 최고수준으로 건강을 유지할 권리는 건강권의 기본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 핵심 의무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 a.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도 차별 없이 의료 설비, 물자, 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
- b. 최소한의 적절한 영양을 함유한 필수 식품을 공급하며 모든 사람이 기아로부터 해방되도록 보장하는 것.
- c. 기본적인 주거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 d. '세계보건기구(WHO)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행동계획'에서 정의한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
- e. 보건의료 시설 및 물자, 서비스의 평등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
- f. 전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 정책과 계획을 도입하고 이행하는 것.
- g. 전염병 및 풍토병을 예방, 치료,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 h. 주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법과 억제법을 포함하여 정보를 공급하는 것 등.

국가의 최소 핵심 의무는 '점진적인 달성'이 허용되지 않는 즉각적인

국가의 의무이다.

### ③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규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시국은 모든 국내자원은 물론이고 이용 가능한 모든 국제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권리의 '기본적인 향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데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인 의무이다. 일반논평 3 당시국의 의무의 성격에 따르면, 상당한 수의 개인들이 필수적인 음식과 기초 의료서비스, 기본적인 주거 혹은 기초적인 교육의 기회 등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면 국가는 규약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권리의 기본적인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할 의무에는 '자원 배분에 개입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자원 배분에 개입할 수 있다. 먼저, 사적 영역에 개입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조치이다. 예를 들어, 양도세나 재산세 부과를 통해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나, 최저임금이나 기타 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기업을 규제하는 것, 또는 의료수가나 의약품 값 결정에 개입하는 것이 모두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조치'인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많은 인권기구들이 지적하듯이, 정부지출 내 군사비용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지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14(g)항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할 대안조치 없이 특정 공공지출을 삭감하거나, 다른 명목의 지출로 전환한 경우는 명백한 의무 위반이다. 또한, 비슷한 경제 상황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권의 실현에 대한 지출이 적은 국가는 분명히 자원 활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듯, 2조 1항에 명시된

'모든 가용자원'은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부의 재분배 조치들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자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한편,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권리 향유 실태를 모니터함으로써 이행 가능하다. 개별 권리들의 기본적인 향유 기준에 근거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영역과 필요한 자원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원을 확보하고 분배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권리 향유 실태를 모니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국가 의무이다.<sup>④</sup>

결론적으로,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의무'는 현재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평등하게 사용하여,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의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의무를 말한다. 이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의무이다. 일반논평 3 당사국의 의무의 성격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권리가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경기 후퇴에 의한 자원 제약의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드는 계획을 세워서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사회권규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의무이다.

사실,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 사건에서 제기된 인권보호에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을 관련 국가기관에게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스트리

히트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작위 혹은 부작위가 사회권의 침해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무능력과 규약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규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그것이 사실인지 증명할 책임을 갖는다.<sup>⑤</sup>

#### 4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영역에서 국제 원조와 협력을 통해”

마지막으로, 규약은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영역에서 국제 원조와 협력을 통해” 사회권을 실현할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국제 원조와 협력의 의무는 국내 가용자원이 사회권의 기본적인 실현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 특히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국내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는 국제원조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3 당사국의 의무의 성격에서, “규약 22조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개발 협력이 특별히 필요하다면, 그 사실을 국가보고서에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당사국은 원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도 지닌다. 예를 들어, 당사국이 생명에 관련된 기술 혹은 지식을 공유하지 않아서 다른 국가 국민들의 생존이 위협당한다면 이는 규약상의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림버그 원칙 30항은 “국제 협력과 원조는 규약상의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되는 국제적 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당사국이 사회권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를테면, 당사국은 자신이 속한 국제기구의 프로그램과 정책이 사회권의 침해를 낳

④ 권리 향유 실태를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기본적인 향유 기준에 근거한 지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고지침서에 따르면, 주거권의 향유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되어야 할 지표들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홈리스의 수', '물·난방·위생시설·쓰레기처리·전기 등 기본적인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가구수', '강제퇴거 당한 사람의 수', '소득에 기초해서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가 정한 기준의 한계를 넘는 사람들의 수' 등등. 모니터에 사용할 구체적인 지표들을 개발하는 것 또한 국가의 의무이다.

⑤ The Maastre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8, Human Rights Quarterly, Vol. 20, No. 3, para. 13.

[...] 않도록 국가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참고자료

- 사회권연대회의, 2001, 「규약 16, 17조에 따른 당사국 보고서 심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한국」, 『사회권 제2차 반박보고서 활동자료집 1』.
- 허혜영, 200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E. Vierdag, 1978,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s Granted by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9.
- HRI/GEN/1/Rev4,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1, *COMPILED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UN.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7,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 A Compilation of Essential Documents*.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7,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 A Compilation of Essential Documents*.
- Matthew C. R. Craven, 1995,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 Perspective on its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of Press.
- M. Bossuyt, 1993,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Strengths and Weaknesses", in K. Mahoney and P. Mahoney (ed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 Paul Hunt, 1997, *Reclaiming Social Righ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Ashgate Publishing Limited
- Robert E. Robertson, 1994, "Measuring Stat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 to Devote the 'Maximum Available Resources' to Realiz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16, No. 4.
-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8, *Human Rights Quarterly*, Vol. 20, No. 3.
- van Hoof, G.J.H., 1984, "The Legal Nature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Rebuttal of Some Traditional Views", in Philip Alston and Katarina Tomasevski(eds.), *The Right to Food*.

# 6

2조 2항 차별금지, 3조 남녀평등

## 1 시작하며

2조 2항 차별금지와 3조 남녀평등은 '평등●권'을 서술하고 있다. '평등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향유해야 함'을 확고히 하고 있다. 평등권은 그 자체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개념이며, 권리를 실현하는 '적용원칙'으로 작용한다.

사회권규약은 평등권을 규약 조문을 통해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다. '평등권'에 대한 언급은 먼저 사회권규약 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서문에서 규약에 가입하는 당사국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약 내에서 평등권은 7조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승진에 대한 동등한 기회', 13조 '고등교육에 관한 동일한 접근' 등에도 나타나 있다. 3

①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에 기초해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혹은 불평등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같은 혹은 다른게 대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과연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정당한 사유이고 합리적인 차별이나를 구분짓는 문제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가치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3조 남녀평등은 독립조항으로 존재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누리는 데 있어서 남녀가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2 조항 해설

### 제2조 2항(차별금지)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제3조(남녀평등)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② Matthew C. R. Craven, 1995,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 Perspective on its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p. 156.

### 1 2조 2항 차별금지 :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2조 2항 차별금지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권리 향유의 불평등한 접근 기회를 제거하고, 권리가 침해받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조 2항 차별금지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사회권규약에 내포된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국가가 스스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사인(私人)에 의해 이루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금지' 개념은 평등을 추구하는 제한적인 수단이며, 절차적인 원칙으로 '기회의 평등', '절차의 평등'에 가깝다. ②

그러나 2조 2항 차별금지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1989년에 제출한 일반논평 18 차별금지(HRI/GEN/1/Rev4, General Comment 18, Non-Discrimination)에서 "동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은 사회권규약 보고서 지침서에서 "규약이 금지한 차별을 야기하거나 부추기는 조건들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규약하에서 '합리적인 차별(legitimate differentiation)'을 구성하는 것도 고

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어 림버그 원칙(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39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를 요구하는 개인과 집단에게 적당한 진전을 보장할 것을 추구하는 특별한 조치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발부터가 다른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금지’ 조치로는 그 동안 누적된 불평등한 상황을 바꾸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차별행위를 제거하는 조치 외에도 차별을 일으키거나 부추기는 조건들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필요로 한다. 즉, 경제·사회적 환경이 취약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국가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는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우선적 원칙을 가져야 한다.

사회권규약에서 차별을 정의하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인종차별철폐협약 1조와 여성차별철폐협약 1조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 규약에서 말하는 ‘차별’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근거한 구별, 배제, 제한 및 선호를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인정, 향유, 실행되는 것을 부정하거나 훼손시킬 목적의 구별, 배제, 제한, 선호를 포함한다.

## ❷ 2항 차별금지 근거 :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사회권규약 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근거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나열하고 있다. 차별금지 근거는 1948년에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 2조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근거’와 일치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대규모 인종학살은 유엔 설립자들에게 취약집단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후 차별금지 근거들은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인종(race)과 피부색(colour)을 차별금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와 같은 인종차별정책이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가져온다는 현실에 주목한 결과이다. 성(sex)을 차별금지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남녀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언어(language), 종교(religion)를 차별금지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소수민족의 언어나 문화 또는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서이며,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potitical or other opinion),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national or social origin)에 기인하는 차별금지는 지난날 갖가지 박해와 차별대우가 의견, 신분의 차이나 출신을 이유로 일어났기 때문이다.<sup>❸</sup> 그 외 재산(property),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birth or other status)을 차별금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이로 인한 차별이 노동, 보건, 교육, 주거 등의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배제를 놓는 결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시 세계인권선언 2조나 사회권규약 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근거는 지금 시각에서 보면 완전하지 않다. 사회와 환경이 변화하자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등장함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래 사회권위원회)는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나이(age), 빈곤(poverty), 장애(disability), 국적(nationality), 건강(health)’ 등을 차별금지 근거로 추가하는 것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sup>❹</sup> 따라서 사회권규약 2조 2항의 차별

❸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1988, 「세계인권선언 해설」, 「인권이란 무엇인가」, 물레, 175쪽.

❹ Matthew C. R. Craven, 1995, p. 170.

금지 근거는 열거(exhaustive)된 것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사회·정의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시적(illustrative)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노인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논평 6,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6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old persons), 장애인(일반논평 5, HRI/GEN/1/Rev4. General Comments No.5 Persons with disabilities)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어떠한 지위의 차별 없이 사회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❸ 3조 남녀평등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한다”

3조 남녀평등은 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sex)에 의한 차별금지를 넘어 남녀가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3조가 독립 조항으로 제정된 것은 남녀평등에 관한 당시 유엔의 입장장을 강조, 반영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정 당시 일부 여권운동가들은 ‘모든 인류’라는 구절이 선언에서 기술한 제반 권리들을 여성들이 평등하게 누릴 수 없다고 느꼈다. 그들은 적어도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이라는 명백한 언급이 빠진 것이, 남성 지배 문화에서 성장한 지도자들이 권리란 오직 남자에게만 속한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염려했다.<sup>❶</sup> 세계인권선언에서 특별히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그 후 1966년 자유권규약 3조(남녀평등)와 사회권규약 3조(남녀평등)에서 독자적인 조항으로 보완되었다.

❶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오름, 59쪽.

1997년에 발표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12항은 국가

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차별—사회·문화적 그 밖에 구조적 불이익으로 야기되는 성차별(gender)—을 없애는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생물학적 성(sex)에 의한 차별금지를 넘어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된 젠더(gender, 인지적 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시한 것이다.

남녀가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기 위한 노력은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 철폐협약에서 아주 구체화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향유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협약은 여성의 참정권, 국적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 보건, 경제, 결혼과 가정생활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여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3 당사국의 이행 의무

### ❶ 존중할 의무

존중(respect)할 의무란 국가가 개인의 사회권 향유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여성을 호주로 입적시키지 못하게 하는 호주 제, 이주노동자의 자녀가 무상의무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은 국가의 의무 위반이다. 만일 국가가 차별적인 법률, 법규, 관행을 지속시키고, 차별적인 법률을 제정한다면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림버그 원칙 37항은 “규약 당사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차별적인 법률, 규칙, 관행(작위와 부작위를 포함하여)도 지체 없이 철폐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례 ) 모든 가정은 남녀평등에 입각해 양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택 속에서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남성 우선적 호주승계 순위 및 부가 우선 입적주의 등의 규정으로 남성만을 호주로 인정하는 현행 호주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호주제와 같은 여성에 대해 차별적인 법률을 현존시키는 한 한국 정부는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실현에 있어서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호주제는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유지·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그 결과 1년에 3만에 이르는 여아들이 낙태를 당하고 있고, 이혼, 재혼, 미혼모 가구를 ‘결손가정’으로 취급하게 한다.

이를 반영하듯이 1999년 11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2차 한국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 이 규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 6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2차 한국 정부보고서를 심의한 후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자 태아에 대한 높은 낙태율이 보여주듯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호주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2 보호할 의무

보호(protect) 할 의무란 사회권을 향유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권리가 사인(私人)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기업이 여성, 장애인을 고용할 때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둔다면 국가는 사기업을 통제하여 차별을 제거할 의무를 가진다. 만일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차별을 방지한다면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는 공적인(국가, 국가관계에서 관할하는 영역) 영역은 물론 사인(私人) 간에도 차별 없이 권리가 ‘보장’ 되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럼버그 원칙 40항에서도 당사국이 공적 영역에서 사인과 사적 조직에게 관행적인 차별을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어 사회권위원회는 차별금지 규범이 사적 집단과 개인 사이(예를 들어 사적 영역의 고용, 교육, 의료보호)에 작동하기를 기대해 왔다.<sup>⑥</sup>

사례 ) 모든 인간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으나 비정규라는 이유로 노동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노동자 사례는 국가가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호의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국가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사회권규약 7조)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노동력을 놓고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규율해야 한다. 국가가 사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하도록 강제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의 임금에 70~80%를 받고 있다. 이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이라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또한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2~80시간으로 법정노동시간의 2배 이상을 초과한다.

## 3 실현할 의무

실현(fulfill) 할 의무란 국가가 차별금지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입법, 교육, 행정, 예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인권법 등을 제정하여 차별금지 영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며, 인권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의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 등이 있다. 국가가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

⑥ Matthew C. R. Craven, 1995, p. 191.

해·적극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세우고, 교육·행정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실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차별을 제거하는 일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행동과 규범화된 차별의식이 쉽게 교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외에 여러 행정·교육·사회적 조치가 필요하다.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내재된 차별의식과 관행은 법률적인 조치 외에도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교정작업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할 만한 재정적인 지출이 있어야 한다.

사례 )) 한국 정부는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장애인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특례입학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뇌성마비 포함) 중 어느 한 가지 장애에 해당하거나 이들 장애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현재 장애인 특례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산업대학 포함 42개이며 학생 1,104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중 국립대는 공주대, 제주대, 창원대, 충북대, 삼척대 등 5개 학교이다.

'장애인특례입학제도'는 입법 조치를 통해 장애인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입법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및 교육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으로 ■ 학우와 대인관계 ■ 학교시설 접근 ■ 학사관리 등을 꼽는다. 그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교육을 받아오지 않은 탓에 갑작스런 통합 교육은 장애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수업과 공부를 위한 기본적인 이동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불

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입법 조치 외에도 예산을 투여해서 (국립)대학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차별금지와 평등권에 관한 국가의 실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된다.

#### 참고자료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1988, 「세계인권선언 해설」, 『인권이란 무엇인가』, 몰레.  
인권운동사랑방, 1998,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차별은 안돼」, 『인권하루 소식 힙본』 11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5,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오름, 59쪽.  
HRI/GEN/1/Rev4. UN, 2001, *COMPILED GENERAL COMMENTS AND GENERAL RECOMMENDS ADOPTED BY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7, "The Limburg Principl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 A Compilation of Essential Documents*.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7,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s", *Economic Social Culture Rights - A Compilation of Essential Documents*.  
Matthew C. R. Craven, 1995,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A Perspective on its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Philip Alston, 1997,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Manual on Human Rights Reporting*, UN PUBLICATION.

부

自序

- 1 | 세계인권선언
  - 2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3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 | 림버그 원칙
  - 5 |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6 | 일반논평 3
  - 7 | 일반논평 9

##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 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 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 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를 권리가 있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 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 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 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 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부록 2

##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체결일자 및 장소 : 1966년 12월 16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 발효일 : 1976년 1월 3일
- 기탁처 : UN

### 【 우리나라 관련사항 】

- 국회동의일 : 1990년 3월 16일
- 가입서 기탁일 : 1990년 4월 10일
- 발효일 : 1990년 7월 10일 (조약 제1006호)
-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9권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人権)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1부

#### 제1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人権)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2부

####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 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사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人権)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人権)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

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 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의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3 부

####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임금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임금과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의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임금과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여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

- 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 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4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 ~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제 4 부

#####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 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 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 제17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 제18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 현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 제19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 제20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 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제2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리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 제24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2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5 부

#### 제26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27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28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29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30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31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

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단, 제41조는 1979. 3. 28에 발효 / 당사국 수 147
- 대한민국 적용일 1990. 7. 10
-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 사회의 권한을 인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규약에 가입 한다.
-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규약 제23조 제4항을 1991년 3월 15일 유보철회하였으며(조약 제1042호), 제14조 제7항에 대해 1993년 1월 21일 유보철회하였음(조약 제1122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의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 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 1 부

####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

~ 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들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4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 제5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존중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의 제한하거나 또는 해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3 부

####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 (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 (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
    - (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3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

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는, 민주 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개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폐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15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 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접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20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22조

-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제23조

-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 기간 중 및 혼인 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 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제24조

-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

-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 제27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